문서번호	문화체육과-103808
결재일자	2015.12.10.
공개여부	대시민공개
보도여부	

주무관	문화관광팀장	문화체육과장	행정관리국장	부구청장
고영석	임경석	이진호	고한석	12/10 하철승

협 조		
	재무과장	김영모
	예산팀장	박종식
	계약팀장	임경환

-2015년 회계연도 미집행사업비-

지출 원인행위(사고이월)

2015.12.8.

강 북 구

- 2015년 회계연도 미집행 사업비 -

지출 원인행위(사고이월)

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사업 및 전통사찰보수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비 미집행액에 대하여 2016년도로 이월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출(사고이월) 원인 행위를 하고자 함.

1 관련규정

☐ 지방재정법 제50조

☐ 강북구재무회계규칙 제27조

2 대상사업

(단위:천원)

사 업 명	주요사업내용	사업비	비고
신검사 미륵불탑 해체보수	○미륵불 해체 및 주변보수공사	100,000	명시이월
화계사 명부전 해체보수	○명부전(보호각)해체보수	600,000	
사인비구제작 동종주변 (화계천)담장보수	○화계사주변 무너진 담장보수 ○전통담장쌓기 및 한식기와 이기	140,000	

3 사고이월 금액 및 사유

☐ 미집행 지출(사고이월)원인행위 금액

(단위:원)

사 업 명	예 산 액 (예산현액)	집행액	원 인 행위액	예산잔액	다음연도 이 월 액	비 고
신검사 미륵불탑 해체보수	100,000,000	50,000,000		50,000,000	50,000,000	
화계사 명부전 해체보수	600,000,000		20,710,000	579,290,000	578,000,000	낙찰차액 1,090,000
사인비구제작 동종주변 (화계천)담장보수	140,000,000		12,350,000	127,650,000	127,000,000	낙찰차액 650,000

□ 지출(사고이월)원인행위 사유

○ 신검사 미륵불탑 해체보수

- 해당사찰이 산중턱에 위치한 난공사 구간으로 자재운반 등이 어려워 공기 연장이 불가피 함

○ 화계사 명부전 해체보수

- 건축구조상 완전해체를 하지 않고 일부 해체로 설계를 진행하였으나, 사찰측의 요구와 전문가의 의견이 반영되어 완전해체로 설계를 재진행 하다보니 사업이 부득이 지연됨

○ 사인비구제작 동종주변(화계천) 담장보수

- 문화재 긴급보수사업비로 긴급 배정되어 설계가 진행중으로 2015년도 회기 내에 사업비 지출이 불가능하여 2016년으로 이월(사고이월)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

붙 임 : 지출결의서 3부.